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9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0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8.10.19.

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8.10.29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】

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지  
아니하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부여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에 존속기한  
5년 부여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조희옥)

#### ○ 본 개정안은

-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「지방재정법」에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부여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○ 검토의견으로는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,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,
  -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,
  - 상위법에 따라 안 제3조의2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 - 아울러,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, 추후 기한 연장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, 운영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행되어져야 할 것임.
  - 그 외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제1호, 제5조제2호,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, 제8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